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자가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해운법」이 개정(2020.2.18.)됨에 따라,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, 납부대행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도입(안 제12조의4 신설)

금융결제원 및 시설,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을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규정하고,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)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
2. 시설,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
- ②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4(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) ① 법 제22조의 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 <u>1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</u> <u>2. 시설,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기관</u> <u>②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부담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	
연 락 처	(044) 200 - 5738